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보험료의 산식(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) 비고 제8호, 제9호를 신설한다.

8.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이 자신을 차주로 하여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,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상당하는 금액(담보로 제공한 예금등의 잔액 또는 대출받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)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비율을 영으로 한다.

가. 은행 :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분기별 평균잔액

나. 보험회사 :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의 연평균 잔액의 2분의 1

다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,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: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연평균잔액

9. 위 표 제3호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중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1호가목, 나목, 다목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은 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 분기말 잔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
부칙을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(은행의 경우에 한정한다.) 또는 연도(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, 보험회사, 종합금융회사,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 한정한다.)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산식에 관한 특례) 법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개정 별표1의 비고 제8호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1에 따라 산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1] 보험료의 산식(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) (생 략) 비고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[별표 1] 보험료의 산식(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) (현행과 같음) 비고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이 자신을 차주로 하여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,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상당하는 금액(담보로 제공한 예금등의 잔액 또는 대출받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)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비율을 영으로 한다.</u> <u>가. 은행 :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분기별 평균잔액</u> <u>나. 보험회사 :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의 연평균 잔액의 2분의 1</u> <u>다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,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: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연평균잔액</u> 9. <u>위 표 제3호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중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1호가목, 나목,</u>

<신 설>

다목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은 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분기말 잔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(은행의 경우에 한정한다.) 또는 연도(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, 보험회사, 종합금융회사,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 한정한다.)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산식에 관한 특례) 법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계정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개정 별표1의 비고제8호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1에 따라 산정한다.